

임대료 납부 혹은 퇴거 15일 통지의 건

(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간 임대료 미지급)

(2021년 2월 1일 및 해당 일 이후 제공된 통지에 사용)

(민사소송법 제1179.03(c)(5))

수신인: _____

(임차인 귀하(귀중) 성명)

캘리포니아 주 공지

본 고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며, COVID-19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고지서와 함께 포함된 신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,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본 제출을 진행할 경우 최소 지급만으로도 임차인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(아래 참조). 비용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기록을 위해 본 서명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하십시오.

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이전에 상기 내용대로 임대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,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사이 발생할 임대료의 최소 25%를 지불하기만 하면 COVID-19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 비용 증가로 인한 임대료 미지불로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귀하의 임대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 각각의 미납 임대료마다 신규 신고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중 발생한 임대료를 전혀 지불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사이 임대인이 발송한 각각의 15일 전 고지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, 귀하께서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이전에 9월부터 1월 사이의 전체 임대료의 25%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

전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하지만, 상기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퇴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권리 보호 및 추후 발생할 분쟁을 피하고자 기지불 금액 및 미지불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 본 통지에 미응답하실 경우 불법 거주자 조치(퇴거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임대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본 퇴거 조치 연장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급이 불가능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임대 지원 절차를 만들었습니다. 본 절차는 귀하가 납부기한이 지난 임대료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 추가로 본 프로그램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추후 임대료 납부 또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모든 임차인이 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시민권이나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지원 수령이나 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부지 위치: _____

총 임대료 및 미납액 _____

_____ (월/년도) \$ _____

_____ (월/년도) \$ _____

_____ (월/년도) \$ _____

_____ (월/년도) \$ _____

_____ (월/년도) \$ _____

지원 자격 충족 방법을 포함한 COVID-19 임차인 구제법 및 주 혹은 지역의 신규 임대 지원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,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<https://housingiskey.com>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1-833-422-4255.

면책조항: 본 공지사항에는 민사소송법 제1179.03(C)이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민사소송법 제 1161조 혹은 기타 해당 연방, 주 또는 지방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는 임대처의 특성 및 장소,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침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및 법률 지원 조직, 임대인 협회, 혹은 임차인 변호 단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